귀하의고용자격을확인하기위해 E-Verify 를이용하는고용주는다음규칙을준수해야만합니다.

- 귀하가일자리를수락하기전에 고용주가 E-Verify를이용해서는안됩니다.
- 고용주는신규고용자전원에대해서 E-Verify를이용해야만합니다.
- 귀하에대한정부의기록중정보불일치 사항을 E-Verify가발견하는경우, 귀하의 고용주는귀하가이의해결을시도하도록 허락해야만합니다.
- 이불일치사항을해결하는동안귀하는 일자리를유지할수있습니다.

더자세한내용은www.dhs.gov/E-Verify를방문하십시오.

질문은E-Verify@dhs.gov로보내주십시오.

전화: E-Verify 고용주핫라인888-897-7787.

E-Verify

E-Verify는 DHS및 SSA가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.

M-1046